

# 돼지 가축공제

## 어떻게 추진되나

글 · 임종철(축협중앙회 공제추진팀장)

**축** 협이 금년부터 돼지에 대한 가축공제를 실시한다.

화재 및 재해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돼지 가축공제는 지금까지 많은 양돈농가로부터 조속한 시행을 요구받아 왔었으며 특히 작년에는 전국 양돈축협 조합장들께서 건의문을 통해 동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였다. 3월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돼지 가축공제에 대하여 축산농가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.

### 1. 사업목적

첫째, 축산농가 경제적 안정을 지원한다.

화재, 풍해, 수해로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고 산지시세의 80%까지 보상하여 원상회복을 지원한다.

둘째, 소비자에게 안전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.

화재, 풍해, 수해로 인한 사고축을 축협과 개업수의사 입회하에 소각 또는 매몰처리하여 중간상인 개입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도축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.

셋째,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.

단계적으로 가축공제 가입농가에 대하여 무료약품 공급 및 진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

으며 그렇게 될 경우 사고예방을 통한 생산비 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**공제료(보험료)의 50%는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**

### 2. 사업내용

○ 대상가축 : 돼지

○ 가입조건 : 돈사별 가입

○ 가입기간 : 1년 원칙(다면, 월단위 가입가능)

○ 공제료부담 : 농가(50%), 축산발전기금보조(50%)

○ 공제요율(%)

구 분	1지역		2지역	
	1급	2급	1급	2급
요율	0.94	1.08	1.06	1.20

[지역구분]

1지역	2지역
서울특별시, 대구광역시, 대전광역시, 경상북도, 충청남도, 충청북도, 전라북도	부산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, 전라남도, 경기도, 강원도, 제주도

\* 지역구분은 풍수재 발생 빈도에 따른 구분이며, 1급, 2급은 축사시설에 따른 구분임.

### 〈가입예시〉

○돼지 1,000두를 두당 10만원씩 계산하여 1억 원을 가입할 경우(2지역 2급기준) 연간 총공제료 및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공제료는?

▶ 적용요율 : 1.20%

▶ 총공제료 : 1,200,000원 (=100,000,000원(가입금액) × 1.20%)

▶ 농가납입 공제료(보험료)(50%보조) : 600,000원

○2000년 총 지원예산(소.돼지.말) : 43억원(축산발전기금)

\*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.

○보상하는 손해

화재, 풍해, 수해로 인한 손해

○보상한도 :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지시세의 80%까지 보상

### 3. 민영보험사와 차이점

최근 민영보험사에서도 가축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요율을 단순 비교하면 축협보다 보

#### 〈축협과 민영보험사 상품비교〉

구분	요율(%)	보조	보상상고	자기부담금
축협	-0.94 ~ 1.20	50%	화재, 풍해, 수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손해액의 20%</li> <li>예) 손해액 : 6,000만원</li> <li>공제금(보험금) : 4,800만원(80%)</li> <li>자기부담 : 1,200만원(20%)</li> </ul>
○○ 회사	-0.35	없음	화재, 낙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 : 손해액 5,000만원까지 자기부담.</li> <li>예) 손해액 : 6,000만원</li> <li>보험금 : 1,000만원</li> <li>자기부담 : 5,000만원</li> <li>- 가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 : 손해액 1,000만원까지 자기부담.</li> </ul>
	-0.45	없음	화재, 낙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 : 손해액 1,000만원까지 자기부담.</li> <li>- 가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 : 손해액 500만원까지 자기부담.</li> </ul>

험료가 낮다. 그러나, 보험료가 낮게 책정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. 단순히 보험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입하지 말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사고 및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.

예를 들어 1억6천만원을 가입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6,000만원의 돼지 피해를 입은 경우 축협은 피해액 6,000만원의 80%인 4,800만원까지 보상하나 민영보험사는 (요율 0.35% 상품에 가입한 경우) 피해액 6,000만원에서 5,000만원(자기부담금)을 제외한 1,000만원을 보상하게 된다. 따라서, 동일한 사고에 있어서 보상금액은 축협 4,800만원과 민영보험사 1,000만원으로 3,8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.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.

### 4. 맷는말

금년에는 돼지 가축공제 사업을 통하여 양돈 농가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그동안 축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농가가 전액 부담하여 왔다. 그러나 이제는 돼지

가축공제가 실시됨에 따라 화재 및 수해 발생시 원상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양돈농가는 그만큼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. 돼지 가축공제는 양돈농가를 불의의 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 가입하여 불의의 손실에 대비하였으면 한다.

끝으로, 금년에 배정된 50%보조예산(축산발전기금)이 소진될 경우 현재로서는 사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. 따라서, 가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가입을 원하는 양돈농가는 해당지역 축협에 문의하여 가급적 빨리 가입 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. **양돈**

(문의: 축협중앙회 공제사업단 02-2224-8734 담당 서재연)